

#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37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1. 2. 5.
4. 회부일자 : 2021. 2. 9.

### II. 개정이유

- 2021년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고등학교 1개교 교명 변경

### III. 주요내용

- 고등학교 명칭 (안 별표 3)
  - 변경: 1개교
    - 용산공업고등학교
      - 명칭 변경: 용산공업고등학교 → 용산철도고등학교

### IV. 참고사항

1. 관계법규(〔별첨 5〕)
  - 가.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2. 예산조치 : 해당없음 (비용추계서 [별첨 2])

3. 관련부서 협의 :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민주시민생활교육과 협의완료

4. 기 타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나. 입법예고(2020.12.29. ~ 2021.1.18.) 결과 : 의견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확인서 [별첨3]

바. 학생인권영향평가: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별첨 4]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2237호로 제출되어 2021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일자로 용산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이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산구에 위치한 용산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2021년 4월 1일자로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용산공업고등학교는 2020년 교육부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선정(진로직업교육과-5913, 2020.6.5.)으로 2022학년도까지 기존 6개학과 중 4개 학과를 철도운전기계과, 철도전기신호과, 철도전자통신과, 철도건설과<sup>1)</sup>로 개편할 계획에 있는바,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학과를 총칭할 수 있는 교명의 필요성에 따라 교명을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용산철도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학과 재구조화 사업선정에 따른 학과개편

학교명	기존학과명(학급수)	신규학과명(학급수)	신입생모집
용산공고	기계과(2)	철도운전기계과(2)	2021
용산공고	전기과(2)	철도전기신호과(2)	2022
용산공고	전자통신과(3)	철도전자통신과(3)	2022
용산공고	건축토목과(2)	철도건설과(2)	2022

- 고등학교의 교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sup>2)</sup>에 따라 관할 서울시교육청의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용산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은 교명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6,2020.11.18.)된 것으로 교명과 관련하여 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1] 학교명 심의 결과**

일자	추진 내용	비고
2020. 8. 18.	교명 변경 신청(1차)	용산공업고등학교 → 서울철도고등학교
2020. 8. 25.	2020년 제1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부결 <sup>3)</sup>
2020. 9. 29.	교명 변경 신청(2차)	용산공업고등학교 → 용산철도고등학교
2020. 11. 16.	2020년 제2회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원안가결

- 더욱이 학교명 변경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 및 졸업생 동문회 등 이해관계자의 84.8%가 학교명의 변경에 대해 찬성하였으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sup>4)</sup> 및 교명변경에 관한 입법예고(2020.12.29. ~2021.1.18.)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는 등 동 교명변경은 다양한 계층의 여러 수단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3) 부결 사유: ① 학교 고유명칭 '용산' 변경에 대한 재고 요청  
 ② 학생, 동문회 등 더 많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요청

4) 제170회 용산공업고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2020학년도 4회,2020.9.25.)  
 - 학교명 변경(안) 원안가결(용산철도고등학교)

**[표-2] 학교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구분	대상인원	의견 제출인원	찬성		반대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재학생	646	553	448	81.0%	105	19.0%
학부모	646	551	450	81.7%	101	18.3%
교직원	109	103	97	94.2%	6	5.8%
졸업생(동문회)	245	185	185	100.0%	0	0.0%
<b>계</b>	<b>1,646</b>	<b>1,392</b>	<b>1,180</b>	<b>84.77%</b>	<b>212</b>	<b>15.23%</b>

○ 다만 용산공업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용산철도고등학교로의 명칭 변경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12월에 용산공업고등학교라는 명칭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을 공고·모집하는 등 새학년도 학사일정을 진행하였고,

교명변경을 위한 입법행위 지연으로 새학년도가 시작된 4월 1일에 서야 교명변경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교명 변경 시 입법절차 실기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약칭: 교육자치법 )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6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당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